

부산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나583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논

담당변호사 임현정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백경 담당변호사 안홍익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규택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7. 16.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20. 선고 2020가단10756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2019. 9. 3. 접수 제496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 원고는 'H 사업' 중 감리용역을 수주한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며, C은 위 사업 중 '조류력 발전장치 운송/설치를 위한 공사'를 G으로부터 수주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2) 원고는 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배임수재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1962호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노698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2. 2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도359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5. 30. 상고기각되어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8. 2. 7. 실질적 피해자인 C을 피공탁자로 하여 2억 2000만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고, C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4)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9. 8. 2.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6369호로 이 사건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C은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부당이득반환 사건’이라 한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8. 28.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9. 3. 피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접수 제49656호로 2019.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시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 1) 갑 제4, 6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밀양시 J 소재 토지 및 부산 사상구 K건물 제3층 L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위 J 토지, K 상가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내지 개별주택가격의 합계는 119,234,650원¹⁾으로 위 금액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소극재산으로는 이미 C에 대한 2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달리 위 적극재산의 가치가 소극재산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C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적극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당한 매매계약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고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과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나 C이 제3자와의 통화 중 피고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녹취록이 제출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약 4,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이나 중도금 없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현영, 판사 조윤정, 판사 홍준서

부동산 목록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 33㎡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계조표) 지상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표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28.83㎡
2층 26.98㎡

- 이 상 -

1) J 토지 62,098,000원 + K 상가 15,115,650원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1,021,000원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21,000,000원